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신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 제도 ----- -----.</p>	<p><input type="checkbox"/> 띄어쓰기 오류 수정 및 조문 정비</p>
<p>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기업심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를 말하며, 법인심사와 기획심사로 구분한다.</p> <p>2. ~ 6. (생략)</p> <p>7. “심사부서”란 다음에 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p> <p>가. 서울본부세관: <u>심사총괄2과</u>와 심사관실</p> <p>나. ~ 다. (생략)</p> <p>8.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관세법」 ----- ----- -----.</p> <p>2. ~ 6. (현행과 같음)</p> <p>7. “기업심사 부서”란 ----- -----.</p> <p>가. 서울본부세관: <u>심사총괄1·2과</u>와 심사관실</p> <p>나. ~ 다. (현행과 같음)</p> <p>8. (현행과 같음)</p>	<p><input type="checkbox"/> 띄어쓰기 오류 수정</p> <p><input type="checkbox"/> 권역내세관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심사부서에 서울본부세관 심사총괄 1과 추가</p>

9. “범칙예비조사”란 심사요원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 또는 조사전담부서로 범칙사건을 이첩하기 전에 범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 이행 위반 혐의자에 대해 혐의 사실 및 증거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 13. (생략)

14. “합동심사”란 기업심사를 실시할 때 심사부서와 다른 부서가 기업심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함께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심사의 관할) ① ~ ④ (생략)

⑤ 기업심사를 시작한 이후에 심사대상자의 사업장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당초 심사를 시작한 세관장이 심사를 끝낸다.

9. -----  
-----  
----- 이관 -----  
-----  
-----  
-----  
-----  
-----  
-----  
-----  
-----  
-----

10. ~ 13. (현행과 같음)

14. -----  
기업심사팀과 다른 업무팀이 함께 -----  
----- 등을 -----  
-----  
-----

제5조(심사의 관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계속 -----  
수행한다.

어려운 용어 정비

합동심사에 대한 명확화

용어의 명확화

제6조(심사팀 편성 및 운영) ① 세관장은  
심사업무량, 심사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부서에 법인심사팀과 기  
획심사팀을 편성하거나 조정할 수 있  
다.

② 세관장은 합동심사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부서와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세관과의 합동심  
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생략)

1. ~ 5. (생략)

제9조(심사분야) ① 심사대상자에 대한  
통관적법성 심사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과세가격 및 세율에 관한 사항

<신설>

2. ~ 7. (생략)

8.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제6조(심사팀 편성 및 운영) ① -----

----- 기업심사 부서에 -----

-----  
-.

② -----

----- 기업심사 부  
서와 -----

③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심사분야) ① -----

-----  
1.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2. 품목분류 및 세율에 관한 사항

3. ~ 8. (현행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9. 지식재산권 침해 -----

용어의 명확화

심사분야에 대한 명확  
화

9. ~ 10. (생략)

② (생략)

③ 세관장은 재조사시에는 결정서 주문 과 이유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심사한다.

④ (생략)

제12조(심사기간 및 기간의 계산) ① ~

② (생략)

③ 세관장은 전체 심사기간 또는 방문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업심사 연장 통지서를 심사대상자에게 보내 주어야 하며, 심사팀장은 심사기간 연장에 대해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등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14조(정보의 수집 및 정보분석보고서의 작성) ① (생략)

10. ~ 11.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주문 에-----  
-----.

④ (생략)

제12조(심사기간 및 기간의 계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보내야 하며,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정보분석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조문의 명확화

정보분석계획서 작성  
폐지

② 심사팀장은 정보분석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분석 계획서를, 정보분석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업심사 정보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 설>

② 심사팀장은 정보분석을 마친 경우에는 -----  
-----  
-----  
-----.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분석 결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결정한다.

1. 정보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처리방향
2. 정보분석 결과 기업심사 대상을 자체 선정하려는 경우 심사대상 선정의 타당성·공정성
3. 통관적법성 위반 제보건, 심사의뢰건, 자체 선정한 기업심사 대상에 대하여 심사 미시작 및 자체종결 사유의 타당성
4. 심사정보 제공 및 합동심사팀 구성에 따라 정보제공자(세관) 또는 심사

정보분석심의회 폐지에 따른 정보분석 처리방안 신설



② 심사팀장은 정보분석 결과 심사대상자가 제17조에 따른 법인심사 대상군에 속한 업체인 경우 관할 법인심사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기획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다.

제16조(정보분석심의회 구성·운영 등)

① 세관장은 정보분석의 투명성과 심사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정보분석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정보분석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국장(서울본부세관은 심사2국장, 대구·광주본부세관은 심사과장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심사관과 심사전문관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심사전문관이 부족하면 심사요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② ----- 정보분석 대상업체가 -----  
-----  
----- 정보분석 결과를 -----  
-----  
-----.

제16조 <삭 제>

정보분석심의회 폐지

③ 정보분석심의회는 정보분석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처리방향

2. 정보분석 결과 기업심사 대상을 자체 선정하려는 경우 심사대상 선정의 타당성·공정성

3. 통관적법성 위반 제보건, 심사의뢰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체 선정한 기업심사 대상에 대하여 심사 미시작 및 자체종결 사유의 타당성

4. 심사정보 제공 및 합동심사팀 구성에 따라 정보제공자(세관) 또는 심사자에 대하여 기여도를 고려한 심사 실적 배분율

5. 기업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서면심사 등 심사방식의 결정

④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제3항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보분석 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법인심사 대상군의 지정) ① (생략)

② 관세청장은 법인심사 대상군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수출입 신고내용과 이와 관련된 품목분류, 과세가격, 관세환급, 관세감면, 원산지, 외국환거래, 수출입요건 등 다양한 정보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신고성실도를 측정해야 한다.

제18조(법인심사 운영심의 위원회) ① ~ ③ (생략)

제17조(법인심사 대상군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대하여 전산적 방법으로 수출입 -----  
-----  
-----  
-- 비교·분석하여 신고성실도를 -----  
-----.

제18조(법인심사 운영심의 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조문 명확화

조문 명확화

④ 운영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5명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의 위원에게 회의 자료를 서면으로 배포한 후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 ⑧ (생략)

제19조(법인심사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① (생략)

② 법인심사 대상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사대상으로 선정한다.

- 1. 관세청장 및 세관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세액 탈루 등 위험성이 높

④ -----  
-----  
-----**의결**-----  
한다. <후단 삭제> 다만, -----  
-----  
-----  
-----  
-----  
-----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법인심사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  
-----

용어의 명확화

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제17조제2항에 따라 측정한 성실도가 낮아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 3. (생략)

③ ~ ④ (생략)

제20조 (법인심사 대상의 선정) ① 관세청장은 선정 담당자를 2인 이상 복수로 지정하여 법인심사 대상업체의 선정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을 상호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3조 (기획심사 기본계획 수립) ① 관세청장은 중점 심사방향과 심사테마를 포함한 기획심사 기본계획을 연간 또는 반기별로 수립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시달해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4조(기획심사 대상의 선정) ① ~ ② (생략)

③ 관세청장은 기획심사 기본계획 및

-----  
----- 신고성실도-----  
-----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 (법인심사 대상의 선정) ① -----  
----- 2명 -----  
-----  
-----

제23조 (기획심사 기본계획 수립) ① ---  
-----  
-----  
----- 통  
보-----.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기획심사 대상의 선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어려운 용어 정비

기획심사 대상 시 고려  
사항 추가

정보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획심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세관장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거래형태·산업 등을 지정하여 정보분석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26조(심사계획 및 변경 보고) ① 심사팀장은 심사계획을 수립할 때 심사대상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심사 또는 범칙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7조(탈세제보 처리) 세관장은 외부로부터 탈세제보를 받은 때에는 제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업심사 계획보고, 이첩, 종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심사실익, 산업현황,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심사 대상을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심사계획 및 변경 보고) ① -----  
----- 기업심사 또는 범칙조사·외환검사를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탈세제보 처리) -----  
-----  
----- 이관, -----

조문의 명확화

어려운 용어 정비

제28조(사전통지) ① 세관장은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업심사 통지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기업심사 통지서와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통지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문심사를 시작하는 날에 기업심사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서식의 첨부를 생략한다.

1. ~ 3. (생략)
4. 별표 3의 관세행정 통합민원센터 신고 안내문
5. (생략)
6.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

제28조(사전통지) ① 세관장은 기업심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  
-----  
-----  
-----  
-----  
-----  
-----  
-----  
-----  
-----  
-----  
-----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식은 첨부  
를 생략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 기업심사 관련 민원 -----  
-----
5. (현행과 같음)
6. -----

□ 조문의 명확화

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환거래자율점검표

7. (생략)

<신설>

② (생략)

----- 별지 제3호 -----

7. (현행과 같음)

② 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업심사 통지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업심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심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1. 별표 1의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다만, 재조사 주문과 관련된 자료에 한정한다.

2. 별표 1의2의 심사자료 제출 관련 안내말씀

3. 별표 2의2의 기업심사(재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4. 별표 3의 기업심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

5.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협약서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세관장은 기업심사 통지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심사대상자에게 송달하고, 수령 여부를 유선 등으로 확인하여 수령인 및 수령일시 등을 기록 유지해야 하며,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갖춰두어야 한다.

- 1. (생략)
- 2. 모사전송(Fax)
- 3. ~ 4. (생략)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자가 기업심사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전 조치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1. (생략)
- 2. 「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2항제3의2호에 따른 가산세 경감 배제

⑤ (생략)

④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 2. 팩스
- 3. ~ 4.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1. (현행과 같음)
- 2. 「관세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제외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어려운 용어 정비

관련 조항 정리

제29조(기업심사 연기)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자로부터 법 제114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연기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시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심사대상자로부터 연기신청 받는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심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2. ~ 5. (생략)

② 세관장은 기업심사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 연기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심사대상자에게 신속히 통보하되, 연기 승인 시에는 변경된 심사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기업심사 연기) ① -----  
-----  
-----  
-----  
-----  
-----  
-----  
-----  
-----  
-----  
-----  
연기신청을 -----.

1.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  
-----
2. ~ 5. (현행과 같음)

② -----  
-----  
----- 연기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연기로 인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된 연기 승인 기간만큼을 당초 심사대상기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기 승인으로 심사대상이 간에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된 심사개

조문의 명확화



③ ~ ⑤ (생략)

제31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 ⑩ (생략)

<신설>

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심사부서장은 심사대상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별지 제36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⑫ 심사부서장은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심사대상자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초일, 토요일 및 공휴일 불포함)에 별지 제37호서식의 발생부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납세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

제36조(심사의 중지 및 재개)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중지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업심사 중지 통지서를 보내 주어야 한다. 다만, 재조사시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기업심사(재조사) 중지 통지서를 사용한다.

1. (생략)

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필요 시 해당 심사부서장 또는 관세청 기업심사과장에게 의견조회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해당 심사부서장 또는 관세청 기업심사과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심사의 중지 및 재개) ① -----  
-----  
-----  
-----  
-----  
-----  
-----  
-----  
-----.

1. (현행과 같음)

심사 중지 사유에 감염병 추가

2.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업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노동쟁의 등의 발생으로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생략)

5. 납세자가 해외 특수관계자 등에게 과세자료를 제출받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기업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6. (생략)

② ~ ④ (생략)

제38조(자료 등의 제출요구) ① 세관장은 법 제30조제3항 및 법 제37조의4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2. 심사대상자가 -----  
-----  
-----  
-----

3. 노동쟁의, 감염병 등의 -----  
-----

4. (현행과 같음)

5. 심사대상자가 -----  
-----  
-----  
-----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자료 등의 제출요구) ① -----  
-----제37조의4제  
4항-----  
-----  
-----

띄어쓰기 오류 수정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사유와 그 근거를 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합리적인 기한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심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 ⑥ (생략)

⑦ 세관장은 방문심사 기간 외에 제출요구한 심사관련 자료의 제출여부 확인을 위해 제50조의 심사처분위원회 개최 전까지 또는 제4항의 조치를 하기 전까지 심사대상자의 임원이나 대표이사로부터 별지 제28호서식의 세관장 요구 심사자료 제출 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  
-----  
-----  
-----  
-----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제54조의 결과통지 -----  
-----  
-----  
-----  
-----  
-----

심사처분위원회 폐지

제39조(심사관련 자료의 일시보관) ①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납세자가 제1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기업심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즉시 돌려줘야 한다.

④ (생략)

제40조(관련자에 대한 자료 요구) 세관장은 법 제266조에 따라 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대상자의 거래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자에게 질문하거나 심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서 해야 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방문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심사팀장의 명의로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의2(기업심사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9조(심사관련 자료의 일시보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때에는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관련자에 대한 자료 요구) ----  
-----  
-----  
----- 문서로써 -----  
-----.

제43조의2 <삭 제>

조문 정비

조문 정비

기업심사 실무협의회의 폐지

심의회 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기업심사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특수관계와 관련하여 제50조에 따른 심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 “처분위원회”라 한다) 상정 전에 과세논리의 보완 등이 필요한 사안

2. 10억원 이상의 고액 추징으로 향후 쟁송이 예상되어 처분위원회 상정 전에 과세논리의 보완이 필요한 중요 사건

3. 중요 불복(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심사 처분의 과세대응 논리의 개발이 필요한 사안

4. 그 밖의 주요 기업심사사례 및 불복사례 연구를 통한 심사처분의 과세대응 논리의 보완이 필요한 사안

② 실무협의회는 관세청 기업심사 담당자, 관세평가 담당자, 쟁송 담당자

등의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논의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을 제출하여 실무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심의 사안이 없는 경우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47조(범칙예비조사) ① (생략)

② 심사요원은 범칙사건 관련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하여 심사대상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35호의2 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작성하게 해야

제47조(범칙예비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별지 제38호 -----  
-----  
-----

준용한 훈령에 해당 서식이 삭제되어 별도의 서식번호 부여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한 증거물이나 물수가 예상되는 물품은 조사부서에 고발·송치를 의뢰하는 때에 함께 송부한다. 다만, 통고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사요원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36호서식의 압수조서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범칙조사시스템에 압수내용을 등록한다.

⑤ (생략)

제49조(심사 평가회의) 심사팀장은 방문 또는 서면심사 종료시 업체 임원, 수출입 부서장 등 업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평가회의 개최시 기업심사 대상업체의 향후 성실신고 유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업체가 의견을 제시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별지 제39호서식의 압수조서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  
-----  
-----.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심사 평가회의) -----  
-----  
-----  
-----  
-----  
-----  
-----

준용한 훈령에 해당 서식번호 변경 및 차후 변경 예정으로 별도의 서식번호 부여

심사처분심의위원회 폐지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사의 경우에는 제2호, 제3호는 생  
략한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참석을 원  
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회의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진술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8. (생략)

제50조(심사처분심의위원회 구성) ① 세  
관장은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  
결과 적출된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  
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 “처분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추징, 행정처분, 재조사 결정 등 심  
사결과에 따른 처분의 타당성

2. 품목분류협의회 등 협의회나 위원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  
하여 -----  
-----

8. (현행과 같음)

제50조 <삭 제>

심사처분심의위원회 폐  
지

회 상정 여부(다만, 제43조의2에 규정된 기업심사 실무협의회는 제외한다.)

3.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여부

4.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송치 의뢰 여부 또는 관계기관 통보 여부

5. 처분논리와 증거의 보완 필요성, 처분위원회 재상정 기한 등 구체적 내용

6. 제5호 또는 제51조제6항에 따른 재심의 요구 안건

7.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제한 등에 관한 판단

8.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가산세 면제 등에 관한 판단

9. 그 밖의 심사처분 방향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② 처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국장(서울본부세관은 심사2국장, 대구·광주본부세관은 심사과장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5명 이내로 위원단을 구성한다.

1. 심사부서 심사팀장(과장) 또는 주무  
계장 중 3명 이상 6명 이내의 사람(대  
구·광주세관은 심사과 주무 2명을 말  
한다)

2. 해당 세관(산하세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3명 이  
상 9명 이내의 사람(다만, 해당 사건  
의 심사부서에 소속된 사람은 제외한  
다)

가. 심사전문관

나. 회계사 자격이 있는 세관공무원

다. 공익법무관

라. 쟁송담당자

3. 통관·조사·감사분야(산하세관을  
포함한다) 담당과장 또는 주무(심사분  
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중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원  
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③ 처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서울·부산·인천세관에 두는 처분위원회: 6명. 이 경우 제2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포함하되, 그 중 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2. 대구·광주세관에 두는 처분위원회: 4명. 이 경우 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과 심사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④ 처분위원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사한 해당 심사팀장 또는 주무는 해당 안건을 심의할 수 없다.

⑤ 처분위원회의 주관부서(이하 “간사부서”라 한다)는 본부세관 심사총괄과

(서울세관은 심사총괄2과, 대구·광주세관은 심사과를 말한다)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이 처분위원회 간사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1조(처분위원회 운영 절차) ① 심사

팀장은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 결과를 처분위원회에 부치려면 방문심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간사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사유와 기간을 포함한 위원장의 승인내용을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 결과를 처분위원회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

1. 농수산물 등 사전세액 심사의뢰건인 경우
2. 기업심사 결과 통관적법성 위반사

제51조 <삭 제>

심사처분심의위원회 폐지

실이 없거나 관세 등 추정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심사사항의 경우. 다만, 특수관계 거래에 관한 심사사항의 경우 제외

3. 심사대상자가 세액탈루 등 통관적 법성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4. 품목분류협의회 등 협의회나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5. 상급관청 또는 관계행정기관 등의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6. 재조사를 실시한 경우

7. 제55조제2호에 따라 고발·송치의된 경우

② 심사팀장은 심사대상자가 처분위원회에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아 기업심사 결과와 함께 간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간사부서는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실관계 및 그

입증자료, 적용법령, 심사대상자 의견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심사처분심의위원회 회부서와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업심사 결과분석 보고서 (이하 “심의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처분위원회에 부친다. 이 경우 심의자료는 처분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의사일정을 통보하고 심의자료를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⑤ 처분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간사부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상정안건에 대한 위원별 의견서를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해야 한다.

⑥ 위원장은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을 심사한 심사팀장(요원) 또는 심사대상자를 처분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진술서 내용을 처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세관장은 처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세관 내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추징 여부에 따른 논란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제5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협의회 또는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⑧ 간사부서는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기업심사결과분석보고서를 위원에게 배포하여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부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상정 안건에 대한 위원별 의견서를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해야 한다.

1. 관세 등 추정금액의 합계가 1억원 미만인 경우
2. 해당 안건과 유사한 사안이 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2조(처분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간사부서는 처분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심사처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를 해당 안건의 심사팀에 보내주고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대구·광주세관은 심의결과의 통보를 생략하고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53조(심사결과 보고) ① 처분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심사팀장은 별지

제52조 <삭 제>

제53조(심사결과 보고) ① 심사팀장은 제12조에 따른 심사기간 내에 기업심

심사처분심의위원회 폐지

심사처분심의위원회 폐지

제25호서식의 기업심사 결과 보고서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재조사시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② 심사팀장은 처분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완지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리계획 등을 기업심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고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심사 건별로 처분내용의 일부가 확정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품목분류 관련 협의기구 안건 상정
2. 관세평가 관련 협의기구 안건 상정
3.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질의
4. 자료 보완 후 재심의

③ 심사팀장은 같은 안건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를 종결하면 -----

-----  
-----  
-----  
-----

② 세관장은 제49조제7호에 따라 심사대상자가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심사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의 의견 및 그 처리방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팀장은 세관장의 검토결과를 기업심사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삭 제>

경우 처분위원회 의결시마다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④ (생략)

제54조(심사결과의 통지) ① (생략)

② 세관장이 기업심사 결과통지를 할 때, 처분내용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내용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부분통지를 할 수 있으며,

③ (생략)

④ 세관장은 기업심사의 결과를 통지할 때 납세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심사시 검토한 내역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55조(심사결과 조치 시기)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는 제54조에 따른 기업심사 결과통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심사결과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심사대상자에게 -----  
--- 심사 시 ----- 제공해야 하며, 제49조제7호에 따른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 및 처리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제55조(심사결과 조치 시기) -----  
-----  
-----

심사처분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 결과 통지 시 납세자의 의견진술서에 대한 검토 및 답변 내용 포함 통지 명시

심사처분심의위원회 폐지

지 이후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위원회에 부치기 전에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 2. (생략)
- 3. 법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 명령, 원산지 보수작업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신 설>

- 4. (생략)

제60조(과태료의 부과)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2. (생략)

-----  
----- 기업  
심사 결과통지 전에 필요한 조치-----  
-----.

- 1. ~ 2. (현행과 같음)
- 3. ----- 반입  
명령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대외무역법」 제33조부터 제3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이 인지되어 「국내 유통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에 관한 훈  
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검사직원에게  
즉시 통보 조치하려는 경우

-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60조(과태료의 부과) ① -----  
-----  
-----  
--.

- 1. ~ 2. (현행과 같음)

원산지 표시 위반 인지  
시 통보절차 신설

띄어쓰기 오류 수정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  
련한 과태료 삭제 및 띄  
어쓰기 오류 수정

3. 「대외무역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4. (생략)

② (생략)

③ 심사부서의 부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사실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 ⑤ (생략)

⑥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위반 법령 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삭제>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1.-----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수에 관한 훈령」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검사에 관한 훈령」, 「원산지표시 검사 및 재조치 운영지침」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 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61조(과징금의 부과)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자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하려는 경우 부과대상자에게 과징금 부과 예정 통지를 해야 하며, 2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예정통지 후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징수에 관한 훈령」

2. <삭 제>

3. -----: 「외국 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61조<삭 제>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한 과징금 삭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과징금의 부과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원산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지침」,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원산지 표시 검사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 및 「국내 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63조(처분 또는 위반사실 통보 등) ① 세관장은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보세구역 관련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제재(주의·경고)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관장과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② (생략)

제66조(심사요원의 상벌) ① (생략)

제63조(처분 또는 위반사실 통보 등) ① -----  
-----  
-----  
-----  
-----적발하거나, 「대외무역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을 인지한 경우에는 -----.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심사요원의 상벌) ① (현행과 같

다른 훈령에서 규정하는 중복 사항 정비로 원산지 표시단속 인지시 담당부서로 즉시 통보

준용한 다른 훈령 폐지

② 심사팀장은 통고처분 또는 고발·송  
치의된 한 건이 「밀수검거자 등의 실  
적평가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3조에  
따른 포상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부서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음)

②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69조(재검토기한) -----  
-----  
----- 2022년  
7월 1일 -----  
----- 6월 30일-----  
-----  
-----.

재검토기한 재설정